




# 안전보건관리 규정


고영테크놀러지(주)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목차

제1장 총칙 .....	4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	6
제3장 안전·보건 교육 .....	11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12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16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18
제7장 위험성평가.....	20
제8장 연구실 안전관리 .....	22
제9장 보칙.....	24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영테크놀러지(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재해"라 함은 사고의 최종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10.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사업주를 말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1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해당 연구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관리직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 안전보건 정책

회사의 전 임직원은 기업활동 전반에서 인간존중을 실천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회사의 안전보건정책은 "안전과 보건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이다. 회사는 절대 우선 순위인 안전보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정책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도자의 책무이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우리 모두의 의미이다. 회사와 임직원은 각자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 사고예방책임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4.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 제6조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① 회사(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 회사(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하도급 사업장은 회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④ 하도급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및 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조직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는 첨부#1과 같다.


###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① 회사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자**

- ① 관리감독자는 구성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제11조 안전관리자

- ①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회사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회사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③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게 한다.
- ⑥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건관리자

- ①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회사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인 경우)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다.


-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게 한다.
- ⑥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직원

### 제15조 회의 등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 교육


### 제16조 교육의 구분

-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제17조 교육의 기준

- ①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과 시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배치전	8시간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정기 교육	전 근로자	매분기	사무직 3시간 / 사무직 외 6시간	
작업내용변경교육	해당 근로자	배치전	2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연중	16시간	
관리감독자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연중	16시간	
관리책임자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선임시/2년마다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시/2년마다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시/2년마다	24시간 이상	

※ 전년도 무재해시에는 상기 교육시간의 50%를 감할 수 있다. (직무교육 제외)

### 제18조 교육 방법

회사는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회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 제19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실시자
2. 교육과정과 출석인원
3. 교육내용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20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 ① 안전·보건팀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다.


- ② 안전·보건팀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공유하고, 생산부서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 ① 회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 장치
  -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 장치
  -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2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 ① 근로자는 제21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인증**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고(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절곡기      라. 크레인      마. 리프트
- 바. 압력용기    사. 롤러기      아. 사출성형기    자. 고소작업대    차.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제24조 안전검사

- ① 회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비의 종류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 ④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법에 의거하여 1회이상/2년 진행하도록 한다.
- ⑤ 안전검사 결과 문제점은 안전보건팀에서 위험기계기구 사용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팀에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보완 시정 조치한다.

#### 제25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 제26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관리책임자는 1일 1회이상,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1일 2회 이상으로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27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 작업별, 설비별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작업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고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8조 작업중지

-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위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30조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할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시설 및 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1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 특수(해당 시), 배치 전 (해당 시), 수시 및 임시건강 및 자율 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화, 근로 시간 단축, 야간 근무 제한, 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위험물질은 반드시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위험물질 사용부서에는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제33조 안전보건 보호구

-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호구 지급시에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이상이 있는 보호구에 대해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혹은 비치하고 해당 부서 관리자는 작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                    |                 |
|--------------------|-----------------|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유해성·위험성      |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요령       |
| 5. 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 7. 취급 및 저장 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15. 법적 규제 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대상물질을 담은 별도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렵거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6조 용어정의

① Near Miss (아차사고)


결과가 대수롭지 않은 부상 혹은 상처가 발생할 뻔한 사고, 자칫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경우

② First Aid Case (응급처치)

1. 일반적으로 간단한 치료 또는 일반의약품 치료의 경우
2. 병원에서 X-ray, 초음파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③ Recordable Case (기록재해)

1. 응급처치의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의 경우
2. 1 Shift (8시간) 이내의 안전, 치료 후 작업에 복귀할 수 있는 모든 장애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3. 병원에서 봉합술을 요하는 상처/항생제가 필요한 치료

④ Lost Working Day Case (작업손실 재해)

1. 1 Shift (8시간) 보다 많은 치료가 요하는 경우
2. 치료 후 당장 일은 하였지만 나중에 1 Shift (8시간) 이상의 결근이 발생한 경우
3.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재해
4.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지역 출장자가 격리, 병가 등이 발생한 경우

⑤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제37조 긴급조치**


- ① 안전관계자(안전담당자, 부서장 등)는 중대재해 및 화재, 폭발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목격한 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안전보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화재발생 및 긴급상황발생 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주위 동료 근로자에게 알려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사고조사**

-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안전보건부서에 통보한다.
- ② 안전사고보고는 사고 개요, 원인,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사고조사는 당해 부서장 및 안전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책임과 권한**

- ① 사고발생부서(장) 역할
  1. 사고발생부서 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조사를 개시·시행한다.
  2.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팀으로 즉시 유선 보고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3. 모든 사고의 보고는 24시간내로 하고, 사고원인 및 개선대책 수립이 포함된 사고 조사보고서는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사본은 안전보건팀에 제출한다.
4.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교육 시킨 후 안전보건교육일지에 작성하여 교육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후 안전보건팀에 제출한다.
5.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사고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요양 1개월 이후에는 요양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안전보건팀에 매월 제출한다.

② 안전보건부서의 역할

1. 사고 접수 후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중대재해의 경우 당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 제거 상태를 확인한다.
2. 당해 감독자, 근로자 및 목격자 진술 또는 현장검증을 토대로(사고조사보고서) 사고조사를 실시 및 확인한다.
3. 사고발생부서에서 사고 관련 개선대책 수립 시 회의에 참석 한다.
4. 동종 및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타 부서(팀)에 관련 내용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사 공지한다.
5. 중대재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6. 산재요양시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 신청을 접수한다.
7.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한다.
8.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원인과 잠재적 위험노출을 파악하여 검토한다.


**제40조 기록유지**

- ① 모든 산업재해기록과 이와 관련된 서류는 최소한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요양자 상담일지는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요양자 상담일지는 월별로 기록 작성하여 당해 부서에서 원본을, 안전보건팀에서 사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1조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본 규정 제45조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4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제45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 제8장 연구실 안전관리

#### 제4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① 연주의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진단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고의 기록 유지 및 지도 조연에 관한 사항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 조언 사항
1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 **제47조 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 가. 해당연구실의 안전현황
  - 나. 해당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다.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5.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해당 연구실의 안전유지를 위한 예방활동

② 연구실책임자는 위의 각호의 연구실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안전담당부서는 다음 각목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사고보상 보험료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연구실에서 연구과제수행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 제9장 보칙


### 제49조 포상

-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제안 등이 채택된 자
  4. 기타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로 인정한 자

### 제50조 징계

-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 제51조 문서보존연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제6호의 경우 5년, 제6호의 발암성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위험기계기구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제52조 변경절차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3조 준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b>				
	개정번호	4	개정일자	2023.06.23	담당부서

#첨부.1 안전보건조직도

